

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

본 조례안은 1999년 1월 1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1999년 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■ 제안사유

-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■ 주요골자

○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(제2조)

-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,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설치

○ 재원 (제3조)

-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2/1000에 해당하는 금액 적립
- 기타 수입액

○ 기금의 용도 (제4조)

-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정비
- 재난발생 및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
- 재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
- 안전점검장비 등의 구입 및 보수, 정비

○ 융자금 지원 (제4조2항)

- 민간소유의 재난위험시설로써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의 민간인에 대한 융자금 지원(이율연리 5% 이내)

○ 기금의 운용관리 (제6조)

-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,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구금고에 예치·관리

○ 심의회 설치 및 구성 (제7조)

- 기금운용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설치 운영

○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(제9조)

-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

■ 참고사항

- 행정자치부 조례제정 참고자료 : 시 재관 14000 - 252('98. 5. 18)
-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
- 기타 입법예고 결과 ('98. 12. 11 ~ 12. 30) : 특기사항 없음

■ 검토의견

- 1997년 8월 30일 공포된 재난관리법 개정 법률(법률 제5404호) 제56조(재난관리기금의 적립) 및 제57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) 규정에 의하면 시·군구별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,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동령 제1항 제4호에서 재난의 예방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
- 제2항에서 민간소유시설(재난위험시설, 중점관리대상 한정)의 소유자 등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못하는 경우와 대피,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용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본 조례안 제3조, 재원, 제4조, 기금의 용도, 제6조, 기금의 운용 관리, 제7조, 심의회 설치 및 구성, 제9조, 운용 계획수립은 꼭 필요로 하는 내용만 명기되었다고 보아집니다.
- 특히 본 조례안중 제5조, 융자금의 이율은 타 자치구 조례안과 비교 할 때 부산의 경우 연리 5%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, 경기 연리

5%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, 강원 연리 5~8%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융자조건을 볼 때

- 우리 구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로 한다는 적용은 경제능력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것이므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.
- 그러므로 본 조례안의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긍정적으로 처리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
-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■ 참고자료

-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융자조건 관련